

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. 21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와 제14조의1(서면보고)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.

나. 의결사항

1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사 - (2011-04(서)-010)

-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
신 청 사	변경사항	변경 주요내용
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사*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디지털 채널 확대 및 아날로그 채널 축소에 따른 장비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

*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, (주)티브로드홀딩스수원방송,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, (주)티브로드동남방송, (주)티브로드홀딩스, (주)티브로드서부산방송, (주)티브로드홀딩스중부방송, (주)티브로드홀딩스남동방송, (주)티브로드새롬방송, (주)티브로드기남방송, (주)티브로드한빛방송, (주)티브로드ABC방송, (주)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, (주)티브로드서해방송, (주)큐릭스종로중구방송, (주)큐릭스대경방송, (주)큐릭스대구방송, (주)큐릭스광진성동방송, (주)노원케이블종합방송, (주)큐릭스서대문방송, (주)큐릭스방송, (주)한국케이블TV나라방송, 남인천방송(주)

2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- (주)씨엠비씨 등 2개사 - (2011-04(서)-011)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에 의거, (주)씨엠비씨 등 2개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< (주)씨엠비씨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(Discovery Channel Korea)	다큐멘터리 (텔레비전)	이한담	이한담 (100%)	5.2억원 (5.1억원)

< (주)티캐스트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드라마큐브 (Dramacube)	드라마 (텔레비전)	강신웅	(주)티알엠 외 1 (100%)	30억원 (109.4억원)

다. 보고사항

1) 「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」에 관한 사항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의거,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(총 41건*)를 보고 받음

* 방송분야 10건, 통신분야 12건, 네트워크분야 11건, 전파분야 8건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활성화 촉진

-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와 모바일인터넷 콘텐츠공급업자(CP)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제공대가 기준을 현실화(가이드라인 제·개정)
- 개인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 동의시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, 위치정보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신고기한(신규 30일 전, 변경 10일 전)을 폐지(위치정보법 개정)
- 건전한 인터넷 광고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스마트워크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기준 등을 마련(가이드라인 제정)

②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및 인허가 절차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

- 지역MBC, 지역민영방송 및 라디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10% 정도 인하하고, 전기통신사업의 동일 금지행위 위반횟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(고시 제·개정)
-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고, 산간·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위성용 초소형 지구국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(방송법시행령, 전파법 개정)

③ 장애인,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편익증진 및 이용자 불편 해소

-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방송의 편성 및 방법 등에 관해 방송사업자가 이행할 기준을 마련(가이드라인 제정)
- 차상위 계층이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신청할 때 증빙자료 제출없이 온라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(요금감면절차시스템 개선)
- 통신 결합상품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, SNS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수칙 등을 마련(고시 개정, 가이드라인 제정)

④ 행정행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화

- 별도 규정 없이 매번 공고하던 방송사업 허가·재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, 주파수 할당·재할당 심사기준을 고시로 규정(고시 제정)
-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시 안전의 사전검토 및 피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을 명시(고시, 훈령 개정)

⑤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MVNO 데이터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, 교통·방법·방재·환경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u-City 자가통신망간 연계사용을 허용(가이드라인 제정, 고시 개정)
- 물류관리, 도난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계유도 무선설비의 허용거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해(1m→최대 3m) 수출확대 등을 지원(고시개정)
- 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범위에 기능자격증 소지자까지 허용하고,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DTV방송보조국의 출력 범위를 50W에서 100W까지 확대(시행령, 고시 개정)